

# 면허없는 건설업과 근로내용 확인신고

**Q** 상용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신고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업체관리번호로 신고해주면 되고 연금건강은 세금신고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줘야 하는데 신고해줄 본사가 없는데 보험료를 안내도 되는지?  
아니면 공단 직권으로 보험료를 추징할 때 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추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지역으로 내시는 분들이 직장가입자로 바뀌는걸로 하는데 상용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본사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A** 본사 관리번호가 없어서 근로자 건강연금가입이 불가능하더라도 공단에서 추징이 나오면 납부하는 것이며 추징대상이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소급해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동안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환급됩니다.

**Q** 면허없는 하도급이라 하도급관리번호는 못받고 있다.  
이럴 경우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내용확인신고 보험료신고의무는어떻게되는지?  
원청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추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해서 추징금이 나오면 원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A** 정식하도급을 받은 하도급 사업장이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연금 보험료신고의 경우는 영용직지급조서제출과같은인건비 세무신고를 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해줘야 합니다.  
무면허건설업이 하도급받은 경우라도 고용산재는 정식하도급업체에서 부담의무가 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정식 하도급업체에 있으나, 무면허 건설업체가 인건비를 비용처리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무면허건설업체가 건강연금보험료신고만큼은 해당자가 있으면 해야합니다.

하도급/재하도급관계에서 4대보험 신고방법	신고주체
고용산재보험료신고	하도급업체가 한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무신고시 과태료는 하도급업체가 있으나, 현실에서는 거래관계상 하도급업체가 하거나, 재하도급업체가 본사관리번호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연금보험료신고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업체가 신고의무가 있다

**Q** 무면허 건설업인 1인개인사업자이지만 가족을 직원등록하여 4대보험이 성립되어 고용산재관리번호를 받았다.  
무면허건설업이면 2천만원 미만공사 하도급이면 고용산재가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용직분들을 8일이상 일한 걸로 처리하려면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용산재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국민보험만 가입 후 인건비를 탈수 있는 지?

**A** 본사 고용산재관리번호를 받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본사로 고용신고와 건강연금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무면허건설업이 재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인 경우로서 2천만원이상 공사는 고용, 산재가입, 건강연금가입신고하고, 2천만원미만공사에 대해서는 자신이 본사로 관리번호가 있다면 고용배제, 산재가입, 건강연금가입신고를 해야합니다.

**Q** 재하도, 면허없는 하도급이라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받지못한다.  
일용직신고를 하려 하는데 원도급에서는 고용,산재보험을 신고하라고 각 공사건에대한 사업개시번호를 여러개 받은 상황인데  
이 경우에 근로내용확인신고에 사업장관리번호를 원도급에서 준 사업개시번호를 적고 사업등록번호에는 저희쪽 사업장 번호를 적어도 되는지?

**A** 원도급 개시신고한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사업자번호도 원도급사로 적어야합니다.  
무면허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받지 못하므로 원수급인이 원수급인개시번호, 원수급인사업자번호로 신고하도록 하수급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건설면허가 없는 건설업인데 일용직분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면허가 없으면 원청에서 따로 신고를 한다고 하고, 이천만원 이하 현장이면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 아니면 하도급 번호를 받아서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면 하도급 번호를 어디서 받는지?

**A** 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도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해야합니다.  
보통 본사관리번호로 하며 재하도급은 불법이나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가 누락되어 공단지적시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업체간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는 하도급업체에서 납부가능하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원청,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중에서 누군가는 해줘야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와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은별개임) 또한, 2천만원미만공사의 고용보험가입제외사업장규정은 원청공사금액기준으로 2천만원이상이라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공사가 2천만원미만이라도 가입사업장이며, 이전에 한번이라도 2천만원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고용보험가입대상사업장입니다.